

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기관계정 이체 및 활용 지침

■ 제정: 2026.05.08

■ 관리부서: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라,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기관계정으로 이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이체 대상 및 산식)

- ① 대상 계정: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계정 (단, 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계정은 제외)
- ② 이체 기준일: 매년 12월 31일 기준
- ③ 이체 금액: 다음 산식에 따라 도출된 금액 이상을 이체한다.

(연구책임자계정 잔액 - 제9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의 합) $\times$ 0.2

제3조 (이체 시기 및 절차)

- ①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은 매년 1월 중 연구책임자별 이체 금액을 산출하여 통보한다.
- ② 산정된 이체 금액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.

제4조 (기관계정 이체금의 활용 범위)

- ① 기관계정으로 이체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최우선 활용한다.
 - 가. 임용 3년 이내 교원의 학생인건비 지원
 - 나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의 균등지급 지원
 - 다. 기타 과제수주 노력 교원의 학생인건비 부족분 지원(기관계정 이체 교원에게 최우선권 부여)
 - 라. 학생인건비 우수 연구실 인센티브 지원(학생인건비)
- ② 기관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의 활용 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.

제5조 (이의신청 사유)

-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 제3항의 이체금액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91조의2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휴직이나 교육·지도,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이 제한된 경우
 - 나. 잔액이체 대상 연도 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설된 연구책임자계정
 - 다. 잔액이체 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연구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

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

라. 당해 학생연구자가 없었으나 차년도 학생연구자 확보로 인건비 지급이 예정된 경우

마.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

② 기관계정 이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.

제6조 (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)

① 연구책임자는 이체 금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.

②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한다.

③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후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.

④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관련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의 경우 이체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한다.